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법무부장관이 특구·지구 등에 입주한 연구기관·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함(안 제44조의2).
- 도지사는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글로벌교육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2조, 안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7까지).
- 민·관·군 상생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민·관·군 협력위원회를 두고, 시·군에는 시군 민·관·군 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3조의2).

II. 검토의견

1.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특례에서 국가 제외 (안 제20조의2)

- 안 제20조의2는 강원첨단기술단지 내 국유재산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 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1)에 해당하는 자에는 국가가 포함되어 있으나 국가가 국가에게 국유재산을 수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 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움.

이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서 국가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는 수정의견을 행정안전부

-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라.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2의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5.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4호에 따라 설립한 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제20조의2에서 같다)와 제20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
 6. 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7.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이하 “대학법인”이라 한다)
 8.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

와 협의하여 마련함.

개정안	수정의견
<신 설>	제20조의2(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국유재산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국가는 제외한다) 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 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생 략)

2. 시군 민·관·군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위임 규정 신설 (안 제73조의2)

- 안 제73조는 강원자치도 내의 민·관·군 상생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민·관·군 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협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군에 시군 민·관·군 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강원자치도에 설치되는 민·관·군 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시군 민·관·군 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위임 규정은 부재함.

이에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시·군 민·관·군 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함.

개정안	수정의견
<신 설>	제73조의2(강원특별자치도 민·관· ^V 군 협력위원회) ① ~ ⑦ (생 략) ⑧ 그 밖에 ^{도V} 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 정하고, 시·군 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조례로 정한다.

3. 종합계획에 대한 적용례 신설 (안 부칙 제2조)

- 안 제29조는 도지사가 수립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에 외국인근로자정책 및 첨단지식 분야 외국인유학생 육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해당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으로 2024년에 수립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사항의 적용 시점을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 시행 이후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수정의견을 마련함.

개정안	수정의견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및 제5항, 제73조의19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및~~ 제5항, ~~제73조의19~~^{제42조 및}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기타 사항

-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체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 기 도)